

대학원학위수여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동서대학교 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에서 수여하는 학위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위수여)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·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·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은 별지 제 4, 5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

제 2 조의 2(논문 제출자격) 학위청구논문 제출하려는 자는 수료학점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합격한 자라야 하며, 세부사항은 “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9.09.01.]

제 3 조(학위청구 논문 및 작품 신청서류) ① 석·박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석사과정에 한해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16.>

1.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류(석·박사과정)

- 가.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
- 나.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(소속학과로 제출)
- 다. 학위논문연구계획서 1부.
- 라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- 마.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.
- 바.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서류

2. 학위청구작품 신청서류(석사과정)

3-1-1-2 제1장 일반대학원

- 가. 학위청구작품 심사신청서 1부
- 나. 심사용 작품설명서(소속학과 제출)
- 다. 학위작품연구계획서 1부.
- 라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- 마.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.

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①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9.09.01.] [전문개정 2019.09.01.]

제 4 조(논문 및 작품의 심사) ① 논문 및 작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참석하에 각 학과별로 진행한다.

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09.01.>

③ 자세한 사항은 “대학원 학위논문(작품)에 관한 내규”에 따른다. <신설 2019.09.01.>

[제목개정 2019.09.01.]

제 5 조(심의)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인준한다.

제 6 조(보고)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<개정 2012. 6. 4>

제 7 조(시기)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한다.

제 8 조(명예박사학위) 명예박사학위는 국내외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대학교에 지대한 학술적 발전과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의·결정하여 수여한다.

1.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수여

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.

2.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.
3.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명예박사학위수여를 결정한다.
4.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.
5. 명예박사학위수여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다.

제 9 조 (논문공표)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위의 취소)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-1-1-4 제1장 일반대학원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박 제 호	
학 위 기	
성 명 :	
년 월 일생	
논 문 :	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	학과
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	
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	
년 월 일	
동서대학교 대학원장	○ ○ ○ (직인)
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.	
년 월 일	
동 서 대 학 교 총 장	○ ○ ○ (직인)
교육부 학위등록번호 :	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명박 제 호	
학 위 기	
성 명 :	
년 월 일생	
위 사람은 하여 우리 나라 학술과 문화에	
특수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기로 본 대학교	
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추천함.	
년 월 일	
동서대학교 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	
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.	
년 월 일	
동 서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직인)	
교육부 학위등록번호 :	